

농촌 외국인근로자 일터 및 숙소, 폭염대비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17.(목)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취약사업장 150 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신고

작업현장 내 그늘막, 국소 냉방장치 등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한다. 부족한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지도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바로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 외국인 고용 농축산업, 건설업 등 폭염 고위험업종 대상으로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그늘막 등 보냉설비(2천만원 한도, 70%), 쿨링조끼 등 개인보냉장구(무상) 지원

농가의 숙소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지난 7.12.(토)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화재사고 등 혹서기 가설건축물의 화재 위험이 높아진 만큼, 노후 숙소가 많은 농업 분야에서도 냉방시설·설비 상태와 함께 전기·소방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다국어 상담원(27개소, 59명) 및 통역원(42개소 137명)도 동행한다. 폭염안전 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국어로 직접 설명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대처 능력을 높여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과 별도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체계」를 통해서도 온열질환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인력공단과 EPS서포터즈(전국 316명, 통역지원)는 사업장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입국 초기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냉장구를 지원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긴급 점검은 농촌지역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밀착형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이웃으로서, 일터는 물론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고용노동부-자치단체 긴급점검 개요

2. 「온열질환 예방지침」

3.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별도첨부】 「온열질환 예방지침」 17개국 언어 번역본

담당 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외국인력수급대응TF	책임자	팀 장	임희종 (044-202-7755)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노대윤 (044-202-7739) 김혜정 (044-202-7738)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팀 장	신욱균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나상명 (044-202-8893) 박현건 (044-202-8891) 한진우 (044-202-8895)



붙임 1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 개요

- **[개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작업이 많은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 추진

□ 점검 세부내용

- 점검기간 : 2025. 7. 17.(목)~8. 13.(수)
- 점검대상 : 농·축산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 야외작업이 많은 온열질환 고위험사업장
 -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등 취약사업장 우선 선정
- 합동점검팀 구성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 * 지역협력과 외국인팀 및 산재(건설)예방지도과로 구성
- 자율점검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를 통해 자가점검 실시
- 현장점검
 -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숙소 냉방·소방시설 구비여부 등 사업장 내 온열질환 발생요인 저감 집중 지도
 - * ① 시원한 물, ② 냉방장치, ③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 보냉장구 지급, ⑤ 119신고 등
 - (자치단체) 지역밀착형 재난 및 보건지원 체계 등 안내·지원

□ 특이사항

- 고용노동부 관서별 다국어상담원 및 통역원과 동행하여, 폭염안전 수칙 등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설명
- 취약성이 높은 농가 등 필요시 지방관서장이 현장 점검 동행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 5대 기본수칙 준수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체감온도 계산기

5대 기본수칙 준수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작업중지

- ☑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 민감군

-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 ✔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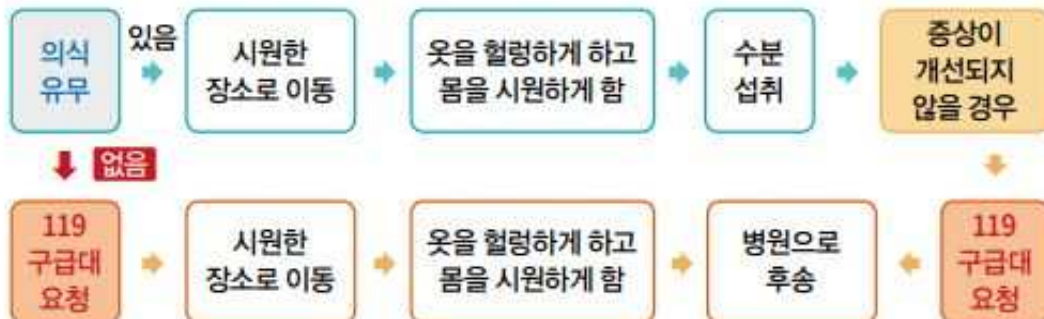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질병관리청)

▶ 온열질환 증상

-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 온열질환 조치 요령

-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붙임 3**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사업주 사전 점검표****〈1〉 물**

- | | |
|---|---|
| ○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생수 등) 등을 충분히 갖추어 두었는지(규칙 제571조) | ☐ 적정
☐ 개선 필요 |
|---|---|

〈2〉 냉방장치

- | | |
|---|---|
| ○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규칙 제560조제2항)
-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가동
-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 ☐ 적정
☐ 개선 필요 |
|---|---|

〈3〉 휴식

- | | |
|--|---|
| ○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의 주기적 부여
(규칙 제560조제2항)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규칙 제560조제3항)
○ 폭염 노출 옥외 장소에서 작업 시 그늘진 장소 제공(규칙 제567조)
○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관리 기준 준수
(산안법 제128조의2) | ☐ 적정
☐ 개선 필요 |
|--|---|

〈4〉 보냉장구

- | | |
|---|---|
|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규칙 제560조제3항 단서)
→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 지급·가동 또는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가동 | ☐ 적정
☐ 개선 필요 |
|---|---|

〈5〉 119신고

- | | |
|---|---|
| ○ 폭염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제562조제3항) | ☐ 적정
☐ 개선 필요 |
|---|---|